

검 토 보 고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동 조례안은 1998년 11월 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의 융자조건과 융자금의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함.(안제5조)

나.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제6조)

1. 융자한도액은 시설물 안전진단비는 2천만원이내, 임대주택 이주비는 세대별로 1천만원 이내
2. 대출금리는 연5퍼센트이하
3. 융자기간은 8년이내
4.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다. 융자금의 상환액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도록 함.(안제9조)

☐ 검토의견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용자조건과 용자금 상환액의 채납처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